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22
----------	-------

발의연월일 : 2025. 6. 18.

발 의 자 : 이성윤 · 정동영 · 양부남
김병주 · 김문수 · 권향엽
전현희 · 윤준병 · 서미화
박균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들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자료제출 · 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 전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적정 제재 수준을 충분히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 · 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훈련생이 만족하는 양질의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58조(지도·감독 등) ① ----- ----- ----- ----- -----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u>5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u>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